#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328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2200354)	2024.06.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 위원회(24.9.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4.9.24.)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4.11.26.) 상정
	한병도의원 (2200816)	2024.06.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 위원회(24.9.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4.9.24.)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4.11.26.) 상정
	채현일의원 (2203628)	2024.09.0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 전위원회(24.11.2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4.11.26.)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26.)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는 법안심 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 원활한 사전투표소 운영·관리 등을 위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투표참관인의 수와 마찬가지로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하며(안 제162조제3항 신설),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1항).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 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 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 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 다. 사전투표소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

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62조 제3항).

라.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함(안 제277조제1항).

####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 본문 중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호 및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을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으로 한다. 제1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 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 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제256조제3항제2호라목 중 "제162조제4항"을 "제162조제5항"으로 한다. 제261조제8항제1호 중 "제162조제3항"을 "제162조제4항"으로 한다. 제2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 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이 속하는 年度(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本豫算에 編成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를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의 전거일전 240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아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 ①제60조제1항에 운동 금지) ①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 사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 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 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자) ① -----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 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 후 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

혂 행 개 정 아 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 第1項第2號 내지 제7호에 해 당하는 者(제5호 및 제6호의 -----제5호-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 함한다)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 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원(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 임비서관・비서관 및 地方議 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 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 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 -----제53조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 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 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

행 혂 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 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 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 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 ② |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 ② (생 략)

<신 설>


정

아

개

- 1. ~ 7. (현행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 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 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 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 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 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현 행	개 정 안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
	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
	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u>③</u> ~ <u>⑤</u> (생 략)	<u>④</u> ~ <u>⑥</u>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61조제7항( <u>제162조제4</u>	라 <u>제162조제5</u>
<u>항</u>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u>하</u>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	
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	
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현 행	개 정 안
등) ① ~ ⑦ (생 략)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8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b>.</b>
1. 제161조제3항 단서, <u>제162</u> 조	1 <u>제162</u> 조
<u>제3항</u> , 제181조제3항 또는 제	<u> 제4항</u>
218조의20제4항에 따라 선거	
관리위원회 · 재외선거관리위	
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	
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2. · 2의2. (생 략)	2. · 2의2.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第277條(選擧管理經費) ①大統領	第277條(選擧管理經費) ①
選舉 및 國會議員選舉의 管理準	
備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各號	
에 해당하는 經費와 地方議會議	
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	
擧에 관한 事務중 統一的인 수	
행을 위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	
會 및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집행하는 經費는 國家가 부담한	
다. 이 경우 任期滿了에 의한 選	

혀 행

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의 選 擧期間開始日이 속하는 年度(第 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 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本豫算에 編成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 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 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 일전 240일)까지 中央選舉管理 委員會에 配定하여야 하며. 補 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事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選擧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 5日[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再選擧에 있어 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日을, 延期된 選擧와 再投票에 있어서 는 늦어도 選舉日公告日前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까 지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配定

1. ~ 7. (생 략)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개 정 안

-해당 선거의 선 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 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 한 경비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 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8 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 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240 일)까지-----\_\_\_\_\_\_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